

## 중등교원 파면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2심]	사건유형	공무원신분
원고	○○○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
판결선고일	[2심] 2024. 8. 23. 원고패	비고	[1심] 2023. 11. 2. 원고승 [2심] 2024. 8. 23. 원고패
사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자이고, 피해자는 원고의 지인임. 2021. 7. 10. 22:00경 원고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2022. 7. 20.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음.</li><li>○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 및 고의성의 정도.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원고의 반성 여부 및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1심법원이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2. 11. 7. 파면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함.</li></ul>		
주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li><li>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li><li>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li></ol>		
판결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처분사유 존재 여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함.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 제1심법원은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는 이 사건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li><li>○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가 정한 징계양정 기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도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사회 일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도입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및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li><li>○ 이 사건 비위행위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해당하고, 이는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있음. 원고가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추행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성적 접촉 이후 추가로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경중을 따질 것도 아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나, 원고와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원고 스스로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파괴한 점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형벌의 모면과 교육공무원 신분의 유지에 더 관심을 보이는 원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li> <li>○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함.</li> </ul>
<p>결 론</p>	<p>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p>